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7.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1년 6월 21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161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7.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근거 및 마일리지제 운영의 보완 등 홈페이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홈페이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 마일리지제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신설(안 제15조의2)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일치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현영)

- 이 조례안은 홈페이지 우수 관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마일리지 운영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본 조례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안 제1조에 목적을 간결하면서도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목적 규정을 변경 함
- 안 제2조제2호 “인터넷시스템” 명칭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변경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항목 삭제 함.
- 안 제5조제3항에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함
-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모사전송 서비스, 온라인 자격증 강좌 수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홈페이지 활성화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함.
- 그 밖에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하거나 주민이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함.
-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환경변화와 패러다임의 흐름에 따라 정보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전반적인 검토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홈페이지 우수 관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홈페이지 마일리지 운영사항 보완,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2 호
----------	--------

제출연월일 : 2011.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정보제공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근거 및 마일리지제 운영의 보완 등 홈페이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구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제명)
- 나. 홈페이지 정보제공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를 통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 다. 홈페이지 활성화 및 구정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용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15조의2 신설)
- 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조표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2011.5.19 ~ 6. 8,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홍보와 구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터넷"이라 함은"을 "'인터넷"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홈페이지"라 함은"을 "'홈페이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라 함은"을 "'정보"란"으로 하며, 제6호 중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전자민원창구"라 함은"을 "'전자민원창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아이디"라 함은"을 "'아이디"란"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비밀번호"라 함은"을 "'비밀번호"란"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모바일시스

템"이라 함은"을 "“모바일시스템”이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시스템"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보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시스템을”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를”로, “정보화부서의”를 “정보화부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홈페이지 운영·관리 실태”로 한다.

제10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 등에 접수한 민원은 위 각각의 동법 시행령에 정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를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전자서명법에 의해”를 “「전자서명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민원상담관을”을 “담당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8조에 따라”를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활성화 또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2. 모사전송 서비스
3. 온라인 자격증 강좌 수강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부여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유효기한,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인터넷시스템을”을 “인터넷 홈페이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스템”을 “홈페이지” 로, 기타”를 “그 밖에”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안업무처리규칙의 규정에 의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조례 제15조의2제3항)

유 형	마일리지	비 고
회원가입	500점	첫 가입시 한번
기존회원	500점	첫 오픈시 한번
홈페이지 로그인	30점	1일 1회 첫 로그인시
정책 제안자	1,000점	제안채택자
정책 참여자	100 ~ 1,000점	추천수에 따라 차등지급
설문조사참여자	200점	참여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의한 인터넷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홍보와 구민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인터넷"이란 ----- ----- ----- <삭 제> 3. "홈페이지"란 ----- ----- ----- 4. "이용자"란 ----- ----- ----- 5. "정보"란 ----- ----- ----- 6.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 -----

현행	개정안
<p>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p> <p>8.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p> <p>9. "아이디"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기호를 말한다.</p> <p>10.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p> <p>11. "모바일시스템"이라 함은 휴대폰 또는 휴대정보단말기(PDA)등 이동성을 가진 기계장치를 말한다.</p>	<p>7. "전자민원창구"란 ----- ----- -----.</p> <p>8. "개인정보"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p> <p>9. "아이디"란 ----- -----<u>인터넷 홈페이지</u>----- -----.</p> <p>10. "비밀번호"란 ----- -----<u>인터넷 홈페이지</u>----- -----.</p> <p>11. "모바일시스템"이란 ----- ----- -----.</p>
제2장 <u>인터넷시스템</u> 설치 및 운영관리	제2장 <u>인터넷 홈페이지</u> 설치 및 운영관리
제3조(<u>인터넷시스템</u>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u>인터넷 홈페이지</u>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p>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1.~5. (생략)</p> <p>6. 기타 국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p> <p>③ <u>인터넷시스템</u>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u>인터넷시스템</u> 운영 주관부서·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 각 호 ----- -----.</p> <p>1.~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p> <p>③ <u>인터넷 홈페이지</u>----- ----- <u>인터넷 홈페이지</u> ----- ----- -----.</p>

현행	개정안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보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청구) ① 이용자는 구청장에게 제5조에 의한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u><삭제></u>
제7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생략)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현행	개정안
<p>1.~8. (생략)</p> <p>9.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p>	<p>1.~8. (현행과 같음)</p> <p>9. <u>그 밖에</u> ----- -----</p>
<p>제8조(담당부서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p> <p>①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u>인터넷 시스템을</u>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u>정보화 부서의</u> 장과 협의를 거쳐 <u>인터넷 시스템을</u> 구축한다.</p> <p>② 정보화부서장은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u>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u>를 점검할 수 있다.</p>	<p>제8조(담당부서의 <u>인터넷 홈페이지</u> 구축·운영)</p> <p>① -----<u>인터넷 홈페이지를</u> ----- -----<u>정보화부서의</u> ----- <u>인터넷 홈페이지를</u> -----.</p> <p>② ----- ----- <u>홈페이지 운영·관리실태</u> ----- -----.</p>
<p>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조 및 「<u>전자정부법 시행령</u>」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 등에 접수한 민원은 위 각각의 동법 시행령에 정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전자민원창구는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제공한다.</p> <p>1.~3. (생략)</p>	<p>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 「<u>전자정부법</u>」 제9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는 ----- ----- -----.</p> <p>③ ----- 각 호 ----- -----.</p> <p>1.~3. (현행과 같음)</p>
<p>제11조(전자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u>전자정부법 제33조 및 제34조의</u>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③ (생략)</p> <p>④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⑤~ ⑥ (생략)</p>	<p>제11조(전자민원처리) ① -- 「<u>전자정부법</u>」 <u>제9조에</u> 따라 ----- ----- -----.</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 ----- -----.</p> <p>⑤~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⑦ 인터넷 민원처리에 있어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증명민원서류 전송 및 민원처리결과 통지에 있어 전자관인의 적용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⑦ ----- ----- 「전자서명법」에 따라----- ----- ----- ----- ----- -----</p>
<p>제12조(민원처리의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③ (생략)</p>	<p>제12조(민원처리의 공개) ① ----- ----- 제10조제1항에 따라 ----- ----- ----- 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민원상담)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u>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u>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민원상담은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u>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p>	<p>제13조(민원상담) ① ----- ----- ----- <u>담당자를</u> ----- ② (현행과 같음) ③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 ----- -----</p>
<p>제14조(대화방 운영) ① (생략)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③ <u>가명으로 접수된 의견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4조(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 ③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견은 <u>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5조(참여마당 운영)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설문 및 정책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제2항의 의견수렴 창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웹메일 가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이 차등화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마일리지는 문자메세지 서비스 1건당 30점, 팩스메세지 서비스 A4용지 1장당 50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참여마당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 -----</p> <p>-----</p> <p>-----</p> <p><삭제></p> <p><삭제></p>
<p><신설></p>	<p>제15조의2(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p> <p>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활성화 또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2. 모사전송 서비스 3. 온라인 자격증 강좌 수강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것 <p>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부여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p> <p>③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유효기한,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수수료) ①~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2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수수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 ----- -----.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생략)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경우 ③~ ④ (생략)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 인터넷 홈페이지를 ----- ----- ----- ② ----- ----- ----- -----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인터넷시스템의 보안)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안업무처리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안) ① -----인터넷 홈페이지----- ----- ② (현행과 같음) ③ 홈페이지 ----- 그 밖에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다.